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736
----------	-------

제안연월일 : 2018. 12.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월 2일 송옥주의원, 2017년 7월 20일 최명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 9.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17년 8월 22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7.11.2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침.

다. 2017년 9월 29일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 2. 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침.

라.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2018. 3.13.)에서 이상의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8.3.14.)는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환경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아울러,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환경기준 및 그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 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기준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 마.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대책,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5조).
- 바.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상태 조사·평가 항목에 기후변화를 명시함(안 제22조제1항 제4호)
- 사.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시책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시책으로 변경함(안 제33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1항 중 “지구환경상의”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3호 중 “인공조명 등”을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같은 호 자목의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를 “기후변화에”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제33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화학물질을”을 “화학물질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u>지구환경상의</u>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 ----- ----- ----- ----- ----- ----- ----- ----- ----- -----기후변화 <u>등 지구환경상의</u> ----- ----- ----- -----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환</u> <u>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u>

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 8. (생 략)

<신 설>

<신 설>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

4. ~ 8.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

<신 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
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
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
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
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1. ~ 3. (생략) <신설>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 아. (생략) 자. <u>유해화학물질의</u>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u>관리</u> 카. <u>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u> 관한 사항 <신설> 5. ~ 7. (생략)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환경의 질의</u> 변화 5. (생략) ②·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u> 5. ----- -----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화학물질의</u>----- ----- 차. -----<u>관리</u>에 관한 사항 카. <u>기후변화에 관한 사항</u> 타. <u>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u> 관한 사항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u>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3조(<u>유해화학물질의</u> 관리) 정	제33조(<u>화학물질의</u> 관리) -----
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	-----
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	-----
기 위하여 <u>유해화학물질</u> 을 적	--- <u>화학물질</u> 을-----
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
마련하여야 한다.	---